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1. 6. 10.
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전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조례안
- 발의자: 김태형 의원 등 7명(배지훈, 조복희, 안영란, 안대국, 홍복조, 이성순)
- 발의일자: 2021. 5. 28.
- 회부일자: 2021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6. 10.)

### 2. 제안이유

- 「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와 관련된 조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정책의 실명관리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 
(안 제4조 ~ 제5조)
-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
(안 제6조 ~ 제8조)

- 정책 관련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-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 등에 관하여 규정(안 제10조 ~ 제11조)
- 사업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5. 28. ~ 2021. 6. 7.)결과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 제2항에서 정책실명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종전 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,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내실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다만, 안 제6조제4항의 내용 중 내부위원의 경우 구청장이 지명하고, 외부위원은 위촉의 대상이므로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, 안 제13조 제3항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의 평가기준, 평가방법 등에 따라 평가하고 추진실적 우수한 경우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이 적정하며,
-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규칙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## 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**

- 우리구의 정책실명제 관리운영을 강화·보완하고,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의 기준을 우리구 형편에 맞추고자 한 제안자의 의견에 공감함.
- 상위기관의 기준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현재 정책실명제를 관리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강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조례로 관리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,
-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평가 의뢰를 가능하게 한 조문의 삭제를 제시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, 바람직한 업무 방향 설정과 전문적인 평가를 위한 외부기관 평가 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위원회 관련 조문 정리에는 동의함.

## **7. 심사결과: 수정가결**

## **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**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내부위원은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.

⑤ 외부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사업평가 및 관리)”를 “(사업평가 등)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구청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<p>제6조(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구의원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.</p> <p>1. 구 소속 5급 공무원으로 한다.</p> <p>2.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</p> <p>3. 구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</p>	<p>제6조(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구성하되,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</p> <p>③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④ 내부위원은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3조(사업평가 및 관리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우수한 신규정책을 개발한 사람,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참여자 또는 사업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.</p>	<p>⑤ 외부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⑥ (조례안 제5항과 같음)</p> <p>제13조(사업평가 등) ① · ②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③ 구청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.</p>